

- 2024년 1월 중 -

##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 안내문

### 추진목표

- ◆ '선(先) 지도, 후(後) 단속'을 통해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 및 불법어업 예방, 투명·공정한 행정 구현

## 1 육·해상 지도·점검 계획

### □ 업종별 불법어업 해상 지도·단속

- (새우조망) 허가외 어업(소형기선저인망) 및 허가구역을 벗어난(92, 100 해구) 조업에 대해 관계기관(동해단, 부산시, 해경) 간 집중 지도·단속
- (대구호망) 진해만, 형제도 등 무허가 또는 허가구역 외 어구부설 및 조업에 대해 관계기관(동해단, 경남도, 해경) 간 집중 지도·단속
- \* (공통) 위치발신장치(VHF, e-NAV, AIS 등) 미작동, 출·입항 미신고 등
- \*\* [무허가 어업] (사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 어업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출입항 미신고] 어업허가 등을 취소 또는 3개월 이내 어업정지

### □ 어종별 불법어업 육·해상 지도·단속

- (문치가자미) 금어기(12.1~1.31) 중 통발·자망 등 포획 및 유통·판매 행위
- (대구) 금어기(1.16.~2.15.) 호망·자망 등 포획 및 유통·판매와 금지체장(35cm) 위반행위,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 관련 무허가 포획 등
- (살오징어) 근해자망 오징어 포획금지 구역\* 및 TAC 초과 어획, 어획량 미보고·거짓보고, 사매매, 지정위판장 위반행위 등
- \* 동경 128도 30분 以東해역(경남·부산·울산·경북허가 어선은 129도 以東해역)
- \*\*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시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동해안 대게 불법어업 합동단속

- 암컷, 체장미달 대게 포획·유통·판매, 암컷대게 통발미끼 사용 및 '대게·붉은대게류 통발사용금지구역(주11해역)'위반 등

< 중점 단속대상 >

- ◆ 암컷 및 체장미달(9cm이하) 등 불법대게 포획·유통·판매 행위
  - \* [법령근거]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업정지] 암컷대게(1차 30일, 2차 60일, 3차 취소) / 체장미달(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
- ◆ 통발어업 대게 포획금지, 대게류·붉은대게류 통발 사용금지구역 위반
  - 경북(경주~울진) 수심 420m 경계선 내 대게포획금지(연중, 주11해역)
  - \* [법령근거] 「수산업법」 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업정지] 1차 20일 2차 30일 3차 40일
- ◆ 그물코 금지 규격(통발 150mm이하, 자망 240mm이하) 위반
  - \* [법령근거] 「수산업법」 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업정지] 1차 20일 2차 45일 3차 60일
- ◆ 대게 TAC 초과어획 및 어획량 미보고·거짓보고\*, 사매매\*\* 행위 등
  - \* [법령근거] 「수산자원관리법」 제38조에 따라 500만원(초과어획(어업정지 1차 30, 2차 45, 3차 60)) 및 300만원(미보고·허위보고(어업정지 1차10, 2차 15, 3차 20) 이하의 벌금
  - \*\* [법령근거] 「수산자원관리법」 제4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어업정지] 1차 30, 2차 45, 3차 60

## □ 조업 및 어구사용 금지구역 위반행위 감시·지도

- 관할해역 근해업종(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서남해구외끌이·쌍끌이중형저인망, 동해구중형트롤 등)의 조업구역\* 및 조업금지구역\*\* 위반감시
  - \* 조업구역 :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동해구-서남해구 저인망 조업구역 분리(수산업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5]) [사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행정] 어업정지(60일, 90일, 취소)
  - \*\* 조업금지구역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도1] [사법처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업정지] 1차 60일, 2차 90일, 3차 취소

## □ **접경수역 우리어선 안전관리 및 외국EEZ 침범조업 관리 강화**

- 외국EEZ\* 경계선 근접조업 어선(서남구저인망·채낚기·자망 등)에 대한 지도·홍보를 강화하고, EEZ침범 조업 위험이 있을 시 사전차단

\* 대화퇴, 한·일 중간수역 및 동해남부~남해EEZ 등

- GPS 플로터 등 항해장비의 세계측지계(WGS-84) 사용

- \* ①'동경측지계'와 '세계측지계'의 혼용 사용으로 인한 항행 위험 주의, ②동경측지계로 사용한 어장위치(좌표)를 세계측지계로 사용시 반드시 좌표 변환

**일본 측, 우리어선 무허가 침범조업 나포·단속 강화**  
기간 : '23년 11월 ~ '24년 5월

## □ **연근해 자망·통발 어구실명제 지도·점검**

- 연·근해 자망·통발 어구실명제 미이행 지도·단속

(예시)

어구 소유자의 성명(연락처) : ○○○(000-0000-0000)

허가어선의 명칭(어선번호) : ○○○호(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 : 10-1[사용어구의 총 개수(통수, 틀수 등)-해당 어구의 일련번호]

\*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어업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 □ **가자미류 4종 금지체장 20cm 적용 지도·홍보**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21년)에 따라 문치가자미, 참가자미, 용가자미, 기름가자미 금지체장(20cm) 적용('24.1.1.) 지도·홍보('24.6.30.)

## □ **어구 생산업 판매업 신고제도 홍보**

-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도 계도기간('23.1.12.~'24.1.11.) 종료에 따라 미신고 업체는 '24년 1월 11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

## 2 어선법

### □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 설치 및 상시작동 지도·단속

- (상시작동) 해상디지털 통신장비 설치사업 의무설치기한이 만료된 업종\*을 대상으로 D-MF/HF 미설치·미작동\*\* 행위 중점 지도·단속
  - 장비를 고의로 미작동하거나, 어선 상시전원이 아닌 배터리모드로 동작하는 등 위치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는 어선 집중점검
- \* (설치대상) 기선권현망·잠수기 어업을 제외한 모든 근해업종
- \*\* (미설치) 어선법 제21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작동)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고장신고)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사실 미신고, 고장신고 이후 수리 등의 조치 미이행 시 어선법 제5조의2 의거 과태료 부과
  - \*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 시 지체없이 관할 해경파출소(해상-어선안전조업국 또는 경비함정)에 신고 후 15일 이내에 수리 등의 조치 필요

## 3 어선안전조업법

### □ 주요 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출입항 신고 이행 철저
  - \* 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특정해역,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어선출입항 신고(확인)서를 신고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어선에 갖춰 두어야 함
- 「어선안전조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신고기관에 출어등록
- 기상특보(태풍·풍랑·폭풍) 및 기상예비특보 발효 시 어업지도선, 해경함정의 이동 및 대피명령 준수, 구명조끼 의무 착용
- 특보 발효 시 사고 예방 및 신속한 구조를 위해 어선의 위치보고 준수
  - \* 1일 1~3회 위치보고+풍랑특보(12시간 마다), 태풍특보(4시간 마다)시 추가 위치 보고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시행, '23.1.12)

✓ **근거** 수산업법 제72조, 제73조

- ✓ **신고 의무자**
- ① **어구생산업** 어구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자
  - ② **어구판매업** 어구를 판매하는 것 (수입하여 유통·공급하는 것을 포함)을 업으로 하려는 자

\* 신고제 대상 어구 : 수산업법상 면허·허가어업에서 사용하는 주요 어구와 어구자재 품목(뒷면 어구목록표 참고)

✓ **신고 절차·방법**

① 온라인 신고 (정부 24 민원서비스 / www.gov.kr)



② 방문 신고 (주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신고서 및 기록장부 서식 찾는 방법**

- 인터넷 주소 :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www.law.go.kr)
- 검색 : ① 신고서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6조, 별지 제70호서식  
 ② 생산·판매 기록장부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9조, 별지 제72호서식

✓ **의무** ① 생산·판매 기록·보전(3년간)

②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준수

\* 허가되지 않은 어구의 제작·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 등 금지

✓ **벌칙** 과태료(2백만원 이하) 및 행정처분(3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

**※ 신규 제도의 적응을 위해 1년간('23.1.12~'24.1.11) 계도기간 운영중**



##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대상 어구 목록표

##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담당 기관 및 연락처

구분	어구의 명칭	어구소재 신고품목	
면허	정치망어구	그물, 돛, 밧줄, 로프	
허가	근해어업	저인망어구	그물, 돛, 밧줄, 로프
		트롤어구	
		선망어구	낚싯바늘, 낚싯줄, 추
		채낚기어구	
		자망어구	그물, 돛, 밧줄, 로프
		안강망어구	
		봉수망어구	그물, 밧줄, 로프
		물망어구	
		동발어구(잠어)	동발, 로프
		문어단지어구	단지, 로프
	통발어구	통발, 로프	
	연안어업	연승어구	낚싯바늘, 낚싯줄, 로프
		형망어구	그물, 로프
		권현망어구	그물, 돛, 밧줄, 로프
		안강망어구	그물, 돛, 밧줄, 로프
		선망어구	통발, 로프
		통발어구	
		조망어구	그물, 돛, 밧줄
		선인망어구	그물, 돛, 로프
자망어구		그물, 돛, 밧줄, 로프	
물망어구	그물, 밧줄, 로프		
구획어업	정치성 구획어구	그물, 돛, 밧줄, 로프	
	이동성 구획어구	그물, 돛, 밧줄, 로프	

해양수산부 어업기재관리과 044-200-5604-5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051-888-5401
인천광역시 수산과 032-440-4862
울산광역시 해양항만수산과 052-229-2993
경기도청 해양수산과 031-8008-4509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055-211-4014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과 054-880-7731
전라남도 수산자원과 061-286-6934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063-280-4652
강원도 환동해본부 수산정책과 033-660-8334
충남도 수산자원과 어업지원팀 041-635-413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45

## 어구 보증금제(시행, '24.1.12)

- ✓ **근거** 수산업법 제81조~84조
- ✓ **내용**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육상에 지정된 반환장소로 되가지오면 보증금을 돌려 주는 제도
- ✓ **제도 적용 대상** 어구·부표(어구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자(보증금대상사업자)이며, 어구등의 출고 또는 수입가격과 별도의 금액(어구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야 함
- ✓ **보증금 부과 어구** 통발 어구 우선 시행(단계적으로 자망, 부표 등으로 확대)
- ✓ **보증금액** 통발 어구 종류별로 1천원 ~ 3천원의 보증금액이 포함
 

				
스프링 통발 1000원	원형 통발 2000원	반구형 통발 2000원	사각 통발 3000원	취원대개 통발 3000원
- ✓ **의무사항**
  - ⓐ 어구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
  - ⓑ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
  - ⓒ 어구보증금의 환급문구를 표시
- ✓ **벌칙** 과태료(300만원 이하)
- ✓ **관리기관** 어구보증금관리센터 (051-718-2452)
- ✓ **제도문의** 해양수산부 어구순환관리과 (044-200-5608-9)





## 카카오톡 채널 '어업정보 알리미'

어업 관련 법령 개정사항, 사전예고제 등을 안내해 드려요~



## 불법어업 신고 및 신고포상금 제도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드립니다.

- 신고대상** 포획금지기간과 금지체장을 위반한 불법어획물의 유통·판매 등 행위
- 포상금** 불법어업,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등 신고 시 최소 10만 원에서 최고 600만 원 까지 지급  
\*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포상
- 신고처** 불법어업신고센터 국번없이 **1588-5119**  
동해어업관리단 051-410-1030~3(eastship.mof.go.kr)  
· SNS 간편제보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동해어업관리단' 친구 추가
- 신고방법**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목적 시
  - 전화신고 : 위치·상호·판매장소 등 불법행위의 정황
  - SNS신고 : 불법행위의 정황과 그 정황이 담긴 사진, 동영상 전송

※ 대한민국 모든 국민 또는 외국인(어선원)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 신원 보호(익명 신고자 포상금 미지급)

